

서울특별시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71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년 5월 2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서울시는 융·복합 기술, 정보통신(ICT),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'12. 9월부터 「서울창업성장센터」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

나.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'26.12.31.자로 만료예정으로, 역량 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유망 신성장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유치, 기술사업화 및 연구개발(R&D), 글로벌 진출 등을 지속 지원하고자 함

다. 민간위탁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해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, '적정'으로 의결되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시설 개요

- 위치 : 성북구 화랑로 14길5, KIST(한국과학기술연구원)
- 규모 : V1동 지상 5층 / 연면적 1,009 m^2
- 공간현황 : 입주공간, 사무실, 교류·협력 공간 등

나. 위탁 개요

- 사 업 명 : 서울특별시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
- 위탁기간 : 3년(2027. 1. 1.~ 2029. 12. 31.)
- 위탁유형 : 시설형 민간위탁
-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- '27년 소요예산(안) : 1,078백만원(민간위탁금)

다. 위탁 사무

- 입주기업 모집, 선발, 계약 등 관리 및 운영
 - 입주기업 심사·선발 등 창업기업 보육지원
 - 운영 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 프로그램 기획·운영
-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운영
 - 기술이전 및 컨설팅 지원, 기술이전 후속 R&D 프로그램 등 운영
- 글로벌 진출 지원 및 마케팅 프로그램 운영
 - 벤처투자자(VC), 액셀러레이터(ACC) 등을 통한 투자기관 네트워크 구축
 - 글로벌 진출 및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운영
- 서울창업성장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
- '위탁자'와 '수탁자'가 기타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을 위해 협의한 사항

라. 민간위탁(재위탁)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추진근거
 - 지방자치법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제3항
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-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(창업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등)

○ 추진경위

- '12. 4. 대학주도 차세대 첨단산업 거점조성 세부실행계획 수립
- '12. 7. 제238회 정례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, 시-KIST 업무협약(MOU) 체결
- '14. 6. 제253회 정례회 재계약 보고
- '17. 11. 제277회 정례회 재계약 보고
- '20. 9. 제297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
- '23. 3. 제316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
- '24. 9. 제326회 임시회 재계약 보고
- '25. 6. 수탁기관 법인격 변화(비영리→영리법인)에 따른 변경협약 체결
- '26. 4. 민간위탁 재위탁 방침 수립
- '26. 5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(적정)

○ 추진 필요성

- 서울창업성장센터는 융·복합 기술, 정보통신,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발굴·육성, 기술교류 및 사업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첨단산업 분야 기업 지원의 거점 역할을 수행해 왔음
- 특히 첨단산업 분야 기업 육성 사무는 민간의 전문성과 능률성은 물론, 유관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다양한 창업주체와의 협력으로 급변하는 창업 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이 필요한 사무임
- 이에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서울형 창업생태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창업지원 분야의 전문성 및 노하우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

마.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('26. 5. 7.) 심의 결과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지방자치법」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○ 「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」

제18조(창업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등)

②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'27년 예산 편성시 민간위탁금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경제실 창업정책과 오선숙(☎ 2133-4876)

고민완(☎ 2133-4879)